

새출발축복의집 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		·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 입소의뢰서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계약해지 및 종료	<p>·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p>·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계약이 해제 된 것으로 한다.</p> <p>· 계약의 종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② 시설 또는 입소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시설장은 물가 변동 즉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개정할 때에는(시설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하되 1개월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변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서 부분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월 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원)				
	구 분		`26년 본인부담금 (30일기준)		
			20%	12%	8%
	본인 부담금 (A)	1등급	558,420	335,052	223,368
		2등급	518,040	310,824	207,216
		3-5등급	489,240	293,544	195,696
	비급여 (B)	식재료비 (간식포함)	270,000 (식비 1일 8,400원 , 간식비 1일 600원)		
		이미용비	없음		
		상급침실료	없음		
	합 계 (A)+(B)	1등급	828,420	605,052	493,368
2등급		788,040	580,824	477,216	
3-5등급		759,240	563,544	465,696	
※ 의료비 발생 시 추가 비용 발생(계약의사 및 병원진료, 약제비, 가정방문간호)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및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등에 관한사항	·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②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③ 화재보험 가입 ·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입소 후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⑥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p>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p> <p>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p> <p>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p> <p>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p> <p>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p> <p>·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p> <p>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p> <p>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p> <p>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p> <p>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p> <p>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p> <p>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p>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p>· 입소된 어르신에 대하여 본원은 시설급여 (신체활동지원,가사활동지원,정서지원,기능평가 및 훈련,치매관리지원,응급지원,시설환경관리,간호처치등)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되 비용일체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또는 대리인)에게는 부담시키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p> <p>(단,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p> <p>· 이용료의 납부 방법</p> <p>-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가 확정되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해당월의 입소비를 입금하여야 한다.</p> <p>·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p> <p>① 서비스이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고지를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매년 공단 급여비용 변경 공고 시 비용을 변경 하며, 공단 입소자 갱신 판정 평가시 (년1회), 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시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하기로 한다.</p>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p>·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p> <p>-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p> <p>-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p> <p>-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p> <p>·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p> <p>-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p> <p>· 정기 병원 처리절차</p> <p>① 병원진료 수 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p> <p>②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상담을 실시한다.</p> <p>③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p> <p>·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p>

	<p>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 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 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 할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후 귀원한다.</p> <p>·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시 처리절차</p> <p>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 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p> <p>·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 할 수 있다. - 기타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p>· 심신상태가 호스피스상태(임종 전)이거나 정신질환(심한 치매), 감염병, 전염병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침실 보호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 할 만 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p>·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 및 감염병과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